

발행일_ 2016. 09. 30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다원기획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¹⁾

이창호 | 선임연구위원 ifsc334@nypi.re.kr

요 약¹⁾

- 신원영군 학대사망사건보도에 드러난 주요 뉴스프레임은 아래 다섯 가지임.
 - 선정적 묘사 프레임: 학대/살해/유기/시신수습/장례식의 세부적인 묘사 및 관련 사진/삽화/사진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공개
 - 개인책임/처벌강화 프레임: 형량(공권력개입) 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주장,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 강조
 - 고정관념화 프레임: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를 강조, 계모=아동학대로 낙인 부여
 - 감정적 단죄 프레임: 뻔뻔함, 인면수심, 악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반사회성,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단죄하는 태도의 보도
 - 대안적 프레임: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공권력의 역할, 남은 자녀 등의 보호, 해외사례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
-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으로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보도의 부족, 계모에 대한 편견 강화 등을 지적하였음.
-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개선방향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존중,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의 필요성, 취재원의 다양화, 후속보도의 중요성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관련 보도준칙을 검토하고 전문가인터뷰결과 및 자문에 기초해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취재과정, 보도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춰 가해자의 신원공개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금지 등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금지, 학대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제한, 피해아동 주변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자제 등을 담고 있음.

1) 이 자료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시과제인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I. 신원영군 아동학대사망사건보도 분석

1. 연구 개요

▶ 2016년 3월 한달간 지상파방송(KBS, MBC, SBS) 및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에 보도된 70개의 뉴스 분석

표 1 방송사별 최초 및 마지막 보도 날짜, 보도건수, 보도분량 분석

채널명	뉴스프로그램명	최초보도날짜	최종보도날짜	보도 건수	보도 분량
KBS1	뉴스9	3월 8일	3월 17일	9	16'09"
MBC	뉴스데스크	3월 8일	3월 27일	12	19'40"
SBS	SBS8뉴스	3월 8일	3월 27일	13	21'41"
JTBC	JTBC뉴스룸	3월 8일	3월 17일	10	20'51"
TV조선	뉴스쇼8판	3월 8일	3월 20일	18	31'32"
채널A	채널A종합뉴스	3월 9일	3월 15일	8	13'11"
뉴스 총 개수				70개	

분석대상 채널 명 : KBS1,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분석 기간: 2016년 3월 1일~ 3월 31일

2. 주요 연구 결과

▶ 질적 분석결과 모두 다섯 개의 뉴스 프레임이 나타났다.

- 1) 선정적 묘사 프레임: 학대/살해/유기/시신수습/장례식의 세부적인 묘사 및 관련 사진/삽화/사진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공개
- 2) 개인책임/처벌강화 프레임: 형량(공권력개입) 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주장,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 강조
- 3) 고정관념화 프레임: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를 강조, 계모=아동학대로 낙인 부여
- 4) 감정적 단죄 프레임: 뻔뻔함, 인면수심, 악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반사회성,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단죄하는 태도의 보도
- 5) 대안적 프레임: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공권력의 역할, 남은 자녀 등의 보호, 해외사례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

- 아동의 몸에 난 멍이나 상처 사진, 학대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삽화, 구타 장면 등의 영상, 시신수습 영상,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의 운구 모습이나 오열하는 장면, 계모=아동학대의 주범으로 고정관념화, 시위에서의 과격화 구호, 살인죄 적용 강조 등의 선정적 묘사와 개인 처벌 만능을 강조하는 보도 경향이 나타났다.

- 원영군을 자주 봤다는 주민, 암매장 전 피의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가게 주인, 원영군을 상담했던 아동상담센터 관계자가 반복해서 등장했으며, 이는 정보원이 차지하는 중요성보다는 접근가능성과 흥미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되며,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됨.

- 또한, 아동학대는 계모나 문제 있는 부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살인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이들 ‘악마’ 같은 반사회적인 존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구성되었음. 이 과정에서 망자나 피해자 및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고, 이차피해나 모방범죄의 우려도 낳았음.

- 살해/학대/유기/시신수습 등의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되고, 피의사실이 단정적으로 규정되며, 언론이 피의자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단죄하는 심판관 역할까지 하고 있었음.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적용을 반복해 강조되는 등 ‘처벌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검찰 송치 후 사실상 보도를 중단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나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찾는 노력과 공동체의 책임을 분석하는 노력은 미비했음.

2.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1. 연구 개요

▶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법전문가 1명, 아동복지전문가 1명, 기자 1명, 변호사 1명, 언론학자 3명, 아동보호기관종사자 2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함.

2. 연구 결과

1)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 인권 침해, 아동학대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보도의 부족, 계모에 대한 편견강화 등을 지적하였음.

인천송도어린이집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학대장면 CCTV가 보도돼 피해아동 및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해당 CCTV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서 거듭하여 인용보도 하여

이에 노출되는 피해아동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조잡한 모자이크 등의 처리만 하여 피해아동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바, 개인정보보호의 부주의가 드러났다. 보도 이후, 위 영상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어 피해아동 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변호사 000).

아동학대 사안의 보도 목적은 사건 발생에 대한 전달보다 발생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화, 즉 아동 학대가 줄고 나아가 근절되도록 함입니다. 그러나 신원영군 사건, 부천여중생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도를 지켜보면 사건의 본질 보다는 작은 팩트 하나라도 찾아서 ‘단독’ 을 난발하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폭증한 매체 수 탓으로 사안에 대한 분석보다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확대 재생산이 반복됐습니다(기자 000).

작년 발생한 인천 11세 여아 감금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였다.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아동보호기관종사자 1 000).

2)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보도방향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들은 피해아동의 인권존중,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 전문적인 취재영역으로의 접근, 후속보도의 중요성, 취재원의 다양화 등을 강조함.

‘심심한 익명보도’ 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시민들의 공분과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사건을 부풀리고, 가해자의 신원은 물론, 피해자의 신분도 가급적 드러내보려는 언론의 취재보도 방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노출은 곧, 피해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의미한다는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에 대한 철저한 익명 편집과 보도방식이 요구됩니다(언론학자 3 000).

내용 관련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닌 이상 현재 국내 언론의 여건상 쉽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1~2년 단위로 출입처가 바뀌고 사건 담당은 초년 기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가 돼있는 기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의 의미, 복지제도 등 용어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맞닥뜨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기자까지는 아니어도 복지정책이나 범죄, 학대 이슈 등 사안별로 기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기자 000).

아동,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들의 심리적 피해까지 고려하고 줄일 수 있는 취재접근과 이들의 2차적 피해를 예방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아동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이니셜을 쓰는 언론인들도 있지만, 곧바로 가해자 부모와 가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 피해자들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 잘못을 언론은 버릇이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신입 언론인 교육과 중견 언론인의 재교육, 편집자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편집이나 데스크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 언론이나 소규모 언론의 경우, 자율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한 교육, 재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 언론문화적 속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언론의 전문성 구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언론학자 3 000).

3)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

인터뷰참가자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으로 피해자신원공개금지, 학대방법 및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서술 제한, 학대행위신고자의 신분노출금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표 2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 피해자 신원공개 금지
 - 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제한
 -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 개별적인 인터뷰로 인한 사실왜곡의 방지
- 아동의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집중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재연의 금지
-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 가령, 아동 생전의 사진, 편지, 소지품 등
- 피해자의 가족 및 관계 기관 등이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가 경찰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기자와 접촉할수 있도록 할 것
 - 담당 실무자가 사태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동안이라도 취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사건보도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예: 계모의 아동학대살인 등 ‘계모’ 부각)
-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주변의 또래, 형제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학대피해아동과 인터뷰를 한다고 쉽거나 학교를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 시설에서 벌어진 성학대 피해사건 취재한다고 시설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너 OO아니? OO의 사건 아니?” 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취재하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 시도)
- 가해자 신원공개 금지
- 아동학대보도영역은 의료, 환경보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취재영역임.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식,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 철저한 인권의식, 윤리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전문영역임
- 학대방법 및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서술 제한
- 가족유형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용어나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
- 아동학대 신고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노출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취재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측에서 해당보도 삭제를 요청할 시 신속하게 삭제해줄 의무를 규정
- 단일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완료 후 일회적 보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의 책임, 혹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방식의 기술 금지

3.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의 보도준칙과 앞서 나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연구자가 초안을 만들고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초안을 검토하였음. 첫 번째 자문회의 때는 언론학자 3명의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 회의 때는 3명의 현직 기자와 2명의 교수로부터 자문을 얻었음.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춰 가해자의 신원공개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금지 등을 강조하였음.

▶ 본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첫째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과 관련해 언론이 지켜야 할 내용이고 둘째는 피해아동 및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이며 셋째는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임.

표 3 —————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보도가 아동 및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① 피해아동 및 가족의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제한
 -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예: 아동 생전의 사진, 편지, 상담내용, 소지품, 학교생활기록부 등).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가해자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가급적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취재과정

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생존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주거지 등에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피해상황을 알고 싶으면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취재를 해야 한다.

※ 관련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 및 관계기관 등이 취재를 거부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및 보도 자제

- 언론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예: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③ 신고자의 신분 보호

- 언론은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인터뷰를 시도)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도내용

①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제한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가급적 학대방법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학대방법에 대해 전달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언론은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집중적으로 노출하거나 학대장면의 재연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관련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②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 금지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계모의 아동학대살인 등 ‘계모’ 부각).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44.5%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재혼가정 7.5% 순이었다.

③ 피해자나 가해자위주의 아동학대사건 지칭 금지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지칭할 때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신원영군 학대살인사건, 원영이사건, 나주 고종석사건 등).

- 가급적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예: 인천아동학대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등)